

도핑검사에 대한 이해

때때로 선수는 시료용기에 오줌이나 혈액시료를 제공하거나 또는 틀 다 제공해야 한다. 이것이 검사이다. 도핑검사는 깨끗한 체육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되는 도핑통제과정의 한 부분이다.

선수로서 자신이 검사과정을 알고 이해하며 자기의 권리와 책임이 무엇인가를 아는것이 중요하다.

제 1 과

이 강의에서 선수는 다음의것을 배우게 된다.

- 선수가 어떻게 검사에 선택되며 시료를 제공할 때 어떻게 하는가, 도핑검사와 관련되는 사람들과 문서들 등을 포함한 도핑검사과정에 대하여
- 검사가 선수의 건강을 어떻게 도모하고 체육정신을 어떻게 보호하는가에 대하여
- 도핑통제과정에 선수의 권리와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 선수생물려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목적

이 강의를 배운 다음 우리는

1. 도핑통제과정들의 단계별을 구분하고 선수가 언제, 어디서, 무엇때문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가를 확인할수 있어야 한다.
2. 감시원과 도핑검사원, 혈액수집원은 누구이며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를 설명할수 있어야 한다.
3. 도핑통제양식(DCF)에 어떤 자료를 넣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4. 검사가 어떻게 체육정신을 보호하는가를 설명 할수 있어야 한다.
5. 도핑통제과정에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을 다할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선수가 도핑통제과정의 요구를 준수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도핑검사의 중요성을 알게 함으로써 깨끗한 체육에 이바지 할수 있게 하는것이다.

제 2 과

선수는 왜 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선수는 열심히 노력하며 경기장에서 공정한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 체육에서 다른 규정과 마찬가지로 검사는 체육을 안전하고 즐겁고 공정하게 한다.

세계반도핑규약에 서술된 기타 모든 규정과 절차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목적은 선수의 건강과 체육정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검사와 건강

금지물질들은 여러가지 리유로 하여 금지목록(목록)에 올라있는데 그 리유중 하나는 그 물질들이 선수의 건강에 해를 줄수 있다는것이다.

검사는 선수가 이런 금지물질을 사용하는것을 저지시키고 금지물질을 사용하는 선수들을 적발해낼수 있게 한다.

도핑검사와 체육정신

선수는 열심히 노력하며 공정한 경기를 진행할 권리가 있다. 도핑검사는 깨끗한 체육과 련관된 품성들뿐아니라 공정성을 유지하게 한다.

실례로 검사는 경기능력에서 우수성과 헌신성, 책임성을 뒤받침한다. 검사는 선수가 많은 노력과 헌신적인 훈련실천과정에 발전한 자기의 기술과 재능을 보여주도록 하며 가장 훌륭한 경기성과를 거둔 다른 선수들과 경기하도록 함으로써 우수성과 헌신성, 책임성을 뒤받침한다.

선수는 검사과정에 참가하여 검사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경쟁자와 종목, 반도핑규정, 중요하게는 선수자신에 대한 존중과 함께 열심히 노력한다는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체육정신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품성들 가운데 어느것이 도핑검사와 관련되겠는가?



그리면 도핑검사란 무엇인가?

검사란 다음과 같다.

검사는 도핑통제과정의 한 부분이다.

검사는 선수를 선택하고 통지하며 오줌 및 혈액시료(또는 둘 다)를 수집하여 실험실에로 이송하는것까지를 말한다.

도핑통제과정은 다음과 같다.

도핑통제과정에는 어느 선수에 대한 검사를 계획하고 진행하며 실험실에서 시료를 분석하고 반도핑규정위반행위에 대한 처리를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장소를 진행하는 공정까지를 포함하는 모든 공정들이 포함된다.



제 3 과

누가 누구를, 언제, 어디서 검사할수 있는가?

누가 누구를?

어떤 선수를 검사할수 있는가?

어느 조직이 검사를 계획 할수 있는가?

반도핑 조직의 권한하에 있는
임의의 선수들과 반도핑 규정에
따라야 하는 대상들이
검사받을수 있다.

민족반도핑 조직들(NADOs)과
국제련맹들(IFs) 그리고
주요경기대회 조직위원회들(MEOs
)은 모두 검사를 진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민족반도핑 조직과 국제련맹과 같은 반도핑 조직들은 어느 선수를 검사할것인가를 결정한다. 주요경기대회 조직위원회도 경기때 검사를 계획하고 진행한다. 실례로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경기대회에서 검사를 할수 있으며 국제스키련맹은 세계최우수스키경기대회에서 검사를 할수 있다.

반도핑조직은 누구를 검사할것인가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반도핑조직은 경기자료, 선수순위, 훈련기간, 경기일정, 종목에서의 도핑경력, 도핑경향에 대한 연구, 지난시기의 위반경력, 고발자나 선수의 생물려권모형을 통해 받은 정보 등에 기초하여 어떤 선수를 검사할것인가를 결정한다.

검사형태에는 목표검사와 함께 우연선택검사도 있다. 일반적으로 반도핑조직의 검사명단에 있는 선수가 검사를 받는다.

그러므로 검사를 받는 선수들은 일반검사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기본검사대상(RTP)과 어떻게 다른가?

검사대상명단외에 반도핑조직들은 기본검사명단도 작성한다. 기본검사명단은 어느 선수가 검사를 가장 우선적으로 받아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반도핑조직의 검사대상에 많은 선수들이 있다면 기본검사대상선수들은 대체로 반도핑조직의 검사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하는 선수들이다.

기본검사명단에 등록된 선수들은 행처정보를 제출하여 검사할 때 찾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본검사대상선수들은 매일 검사를 받을수 있는 60분시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반도핑조직의 반도핑규정이 해외에서 훈련하는 선수들에게도 적용될수 있다. 반도핑규정에 따라야 하는 선수는 누구이건 검사를 받게 될수 있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선수들은 자신이 어느 조직의 반도핑규정을 따라야 하며 자신이 검사대상명단에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자격 박탈을 받고 있는 기간 어떻게 되는가?

은퇴 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가?

해외에서 훈련하거나 경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선수가 자격 박탈을 받고 은퇴하지 않았으면 여전히 검사를 받게 될 수 있다.

선수가 은퇴한 다음에는 검사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선수가 기본검사대상이였고 경기에 다시 참가하려 한다면 경기에 참가하기 6개월전에 자신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만일 자기 나라를 떠나 멀리에 가있다고 해도 선수는 여전히 검사를 받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선수는 반도핑 조직의 통제하에 있으며 반도핑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면 국내에 있든 해외에서 훈련이나 경기를 하든 검사를 받게 될 수 있다.

언제?

선수가 언제 도핑 검사를 받을 수 있는가?

사전 통지 없이 임의의 시각에

선수는 경기시검사를 받을수 있다. 경기시검사는 경기하기전날 23 시 59 분부터 경기가 끝나고 도핑검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이다.

경기기간이 시작되기 전 혹은 경기기간이 끝난 후 임의의 시기에 경기외검사를 받을수 있다.

* 일부 경기대회들과 종목은 종목상 특성으로 하여 경기시점에서 차이가 있을수 있는데 이 경우 경기대회 혹은 경기종목규정에 따라야 한다.

어디서?

선수는 어디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사전통지없이 임의의 장소에서

선수는 훈련장이나 집, 경기대회, 호텔방, 그밖에 적합한 시설이 있는 기타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수 있다.

선수는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수 있다.

검사는 보통 5 시부터 23 시사이에 진행되어야 하지만 특별히 반도핑조직이 진행해야 할 근거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그밖의 시간에도 진행할수 있다.

제 4 과

단계적으로 거치는 검사과정

1. 반도핑조직에서 검사를 위해 선수를 선택한다.
2. 권한을 가진 도핑검사원이나 감시원이 선수에게 선택되었다는 것을 통지한다.
3. 통지를 받은 다음 선수는 도핑검사장소에 도착한다.
4. 선수는 오줌 혹은 혈액 또는 두가지 시료를 다 제공한다.
5. 선수는 도핑검사양식에 자료를 기록한 다음 확인해야 한다.



1. 선수선택

선수는 우연선택, 최종순위, 순위별 등 여러가지 이유에 따라 검사에 선택될 수 있다.

때로 선수들은 정보에 따르는 검사에 선택될 수 있다. 이것은 반도핑조직이 선수에 대한 정보를 받았거나 선수가 도핑행위를 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시기이기 때문에 검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선수에게 통지

선수가 검사에 선택되면 감시원이나 도핑검사원이 선수에게 통지하게 된다.

도핑검사원이나 감시원은 선수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고 선수가 검사에 선택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선수에게 신분증(ID 카드)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감시원이나 도핑검사원이 선수를 확인하기 위한것이다.

도핑검사원이나 감시원은 선수에게 선수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설명하고 도핑검사양식의 통지란에 수표하도록 한다.

3. 도핑검사장소(DCS)에 도착

일단 선수는 통지받으면 선수가 시료를 제공할수 있는 도핑검사장소에 가야 한다. 통지한 순간부터 선수는 항상 도핑검사원이나 감시원의 감시하에 있어야 한다.

선수는 통역원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대리인과 함께 갈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특히 선수에게 있어서 첫 검사라면 대리인과 함께 가는것이 좋다. 선수는 타당한 리유로 도핑검사장소에 늦게 도착할것을 요구할 권리도 있다.

경기시검사인 경우 선수가 지연시킬것을 요구할수 있는 타당한 리유

- 신분증(ID 카드)을 가져와야 한다.
- 준비운동을 먼저 끝내야 한다.
- 대리인이나 통역을 찾아야 한다.
- 이제 경기에 또 참가해야 한다.
- 필요한 의학치료를 받아야 한다.
- 시상식에 참가해야 한다.
- 기자회견에 참가해야 한다.

경기외검사인 경우 선수가 도핑검사장소도착을 지연시킬수 있는 타당한 리유

- 신분증(ID 카드)을 가져와야 한다.
- 대리인을 찾아야 한다.
- 훈련을 먼저 끝내야 한다.
- 필요한 의학치료를 받아야 한다.

경기시검사이든 경기외검사이든 선수는 또한 임의의 타당한 리유나 환경에서 지연을 요구할수 있다. 도핑검사원은 도핑검사장소도착지연을 승인 할것인가를 결정한다.

선수가 검사받지 못할 것 같다면 어떻게 되는가?
선수가 검사를 거절할 수 있는가?

검사를 받는것이 중요하다. 검사를 거절하면 반도핑 규정위반으로 되며 제재를 받게 된다.

4. 시료제공

검사는 오줌 혹은 혈액검사 또는 두가지검사로 진행된다. 이 과정은 류사한 공정을 거치지만 선수가 알아야 할 일부 차이나는 점도 있다. 오줌과 혈액 두 검사는 다 선수생물려권에 이용될수 있다.

그려면 오줌검사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선수는 손을 씻거나(물로만) 장갑을 끼고 시료수집고리를 선택해야 한다.

시료수집고리를 선택할 때 그것이 정확히 봉인되었는가를 확인하고 손댄 흔적이 없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다음 선수는 감시하에 최소 90ml 의 오줌을 제공해야 한다. 선수와 도핑검사원은 시료가 선수의것이라는것을 확인하게 된다.

도핑검사원이나 감시원은 선수와 같은 성별이여야 한다. 도핑검사원이나 감시원이 오줌시료채집을 감시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선수는 시야를 가리지 않게 웃옷은 가슴으로 아래옷은 무릎아래로 내려야 한다.

만일 선수가 처음 검사를 받는 경우 잘 모를수 있다. 이것은 선수가 자신이 깨끗한 선수라는것을 입증하는 기회이다.

만일 선수가 한번에 90 ml 의 오줌을 제공하지 못하면 선수는 충분한 시료량을 제공할 때까지 도핑검사장소에서 기다려야 한다.

시료를 수집한 후 선수는 A 병과 B 병을 넣은 시료수집기구(A 병과 B 은)를 선택해야 한다.

선수는 선택한 A 병과 B 병에 손댄 흔적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병번호와 통번호가 일치한가를 확인한다.

그다음 선수는 B 병부터 시작하여 시료를 분할하여야 한다. 도핑검사원은 매 병에 넣어야 할 시료량을 알려주어야 한다.

도핑검사원은 선수의 시료비중을 확인하여야 하며 만일 시료비중이 적합하지 않으면 선수는 다른 시료를 제공해야 한다. 비중은 실험실이 시료에서의 금지물질을 분석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조언

선수는 항상 자기의 표준수분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너무 많은 량의 물을 마시면 선수의 시료가 너무 희석되며 그러면 선수는 또 다른 시료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수는 A 병과 B 병을 꼭 막고 봉인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A 병과 B 병은 특수한 설비없이 열수 없게 된 특수한 마개가 있다. 만일 누군가 그것을 열기 위해 애쓴 흔적이 있다면 꼭 손댄 흔적이 남게 된다. 선수는 A 병과 B 병을 채운 다음 다시 열수 없다는것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오줌수집과정을 통해 선수가 도움을 청하지 않는 한 선수만이 시료수집고뿐과 A 병, B 병을 다칠수 있다.

혈액검사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혈액시료를 수집할 때 혈액수집성원은 혈액수집절차대로 해야 한다. 혈액검사를 진행하는 혈액수집원은 훈련되고 경험있는 채집원이여야 한다. 혈액수집원은 혈액수집공정을 도핑검사원의 지시하에 해야 한다. 때로는

도핑검사원이 자격받은 채집원이 될 수 있으므로 혈액수집을 진행할 수 있다.

혈액검사전에 선수는 일정한 기간 앉아있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 선수는 혈액수집용기를 선택하여 모든 시료용기번호가 일치한가를 검사하고 확인해야 한다. 도구안에 이미 인쇄된 가늘고 긴 선부호표딱지가 있으면 선수가 용기에 붙이도록 한다.

선수의 이름을 밝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자들과 표식들은 수집용기에 대한 번호로 리용한다. 이것은 실험실에서 선수의 시료를 접수할 때 선수가 누구이며 누구의 시료인가를 모르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혈액수집기구에는 5 개의 병이 있는데 2 개(A 병과 B 병)는 전혈분석용이고 2 개(A 병과 B 병)는 혈청분석용이며 1 개(A 병)는 선수생물려권을 위한 용기이다.

혈액검사원은 채혈부분(선수가 자주 쓰지 않는 팔)을 정하고 소독약솜으로 그 부위를 소독한 다음 혈액시료를 채집하기 위해 지혈대를 고정시킨다. 총 15-16ml 의 혈액을 뽑는데 (매 통에 약 3-5ml 의 혈액을 뽑는다) 이것으로 하여 운동수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 혈액수집원은 혈액채집을 3 번정도 시도할 수 있다.

때로 혈액시료는 일정한 시간(수집용기생산업체가 밝힌대로)동안 방온도에서 있어야 할 수 있다. 이것을 도핑검사원이 감시하게 되어 있지만 선수는 이 기간 남아서 시료를 감시할 수 있다. 만일 선수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여 검사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그 다음 오줌시료와 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선수는 실험실로 시료를 이송할 때까지 손댄 흔적이 없다는 것을 립증할 수 있게 혈액시료를 봉인해야 한다.

선수가 부상을 당했거나
제한조건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선수가 미성년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료수집과정에서 차이가
있는가?

선수는 시료수집과정을
변경시켜줄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미성년에 대하여 변경할수
있다.

5. 선수자료기록 및 확인

일단 오줌 및 혈액시료를 수집한 다음

도핑검사원은 도핑검사양식에 선수의 자료를 물어보면서 기록한다. 여기에는 선수의 감독이름, 지난 7 일동안 사용한 약물과 영양보충제, 혈액검사와 관련하여 지난 3 개월동안에 수혈 및 피흘린적이 있는가 등 일부 상세한 자료들이 첨부된다.

도핑검사원은 선수에게 시료를 반도핑연구에 리용하는것을 동의하는가에 대해서도 물어본다. 연구는 도핑행위를 방지하고 검출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진행한다. 일단 시료가 연구에 리용되면 선수시료로 되지 않는다. (다시말하여 선수의 시료라는것을 누구도 알지 못한다.) 선수가 어떻게 결심하든 시료는 도핑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선수에게 시료수집과정에 어떤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도핑검사양식에 기록한다. (시료수집을 어떻게 하였든 시료제공을 거절하는것은 반도핑규정위반행위와 그로 인한 제재를 초래할수 있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도핑검사양식이 완성되면 선수는 모든 자료가 정확한가를 확인하고 수표한다. 만일 선수시료가 선수생물려권과 관련하여 리용된다면 도핑검사원이나 혈액수집원은 선수생물려권을 위한 추가적인 양식을 리용한다.

조 언

비록 도핑검사양식에는 7 일간 사용한 약물 및 영양보충제를 기록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7 이상전에 사용한 약물 및 영양보충제도 기록하는것이 좋다. 왜냐하면 때로 물질이 선수의 몸안에 오래동안 남아있을수 있기때문이다.

도핑검사양식의 복사본 하나는 선수에게 주며 하나는 반도핑조직, 하나는 실험실에 준다. 선수시료를 분석하는 실험실은 WADA 인증실험실이다. 잊지말것은 실험실에 가는 복사본은 선수신원에 대한 자료가 없어야 한다.

제 5 과

시료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선수는 오줌이나 혈액시료(혹은 둘 다)를 제공하고 도핑검사양식을 확인하고 수표한 다음 선수는 정상적인 일파로 돌아간다.



다음공정은 무엇인가? 시료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선수가 필요한것을 다 한후 도핑검사원이 시료를 보관하였다가 직접, 혹은 송달봉사를 통하여 WADA 인증실험실로 이송한다.

도핑검사장소를 떠난 순간부터 실험실에 도착할 때까지 누가 시료를 보관하였는가에 대한 시료의 《련쇄적인 보관자》를 기록하기 위하여 이 모든 공정에 대하여 기록하고 수표한다.

선수의 시료가 실험실에 도착하면

선수의 시료가 실험실에 도착하면 A 병과 B 병은 처음 손댄 흔적이 없으며 새지 않았는가를 살펴보면서 검사한다.

A 병시료를 열고 분석한다. B 병은 보관된다. B 병은 A 시료에서 금지물질이 발견된 경우와 선수나 해당 반도핑조직에서 B 시료분석을 요구한 경우에만 분석된다. B 병은 최고 10년동안 보관될수 있다.

결과보고

A 시료를 분석한 후 실험실은 결과처리에 책임 있는 반도핑 조직에 결과를 보고한다. 실험실은 시료분석결과를 동시에 반도핑 행정관리 체계를 통해 세계반도핑기구에 보고한다.

A 시료가 양성으로 판명되면 선수는 B 시료 개봉에 참가할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WADA 인증실험실들은 엄격한 규정에 따라 시료분석과정을 규칙대로 하도록 한다.

제 6 과

선수의 권리와 책임

도핑통제과정에 선수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선수의 권리

대리인

선수는 감독, 부모, 기타 성원과 같은 대리인과 함께 도핑검사장소로 갈 수 있다. 특히 선수가 미성년이거나 불구자와 같은 피보호자(규약에 규정된대로)인 경우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필요한 경우 통역

선수는 도핑검사원 또는 감시원과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통역원을 요구할 수 있다.

많은 자료를 문의

도핑검사원들이 필요할 때 도핑검사과정을 협조하거나 설명해줄 수 있으며 질문에 대답해줄 수 있다.

사건 및 문제에 대한 문서화

선수는 도핑검사과정에 대한 임의의 문제점이 있는 경우 도핑검사양식의 해당 부분에 이에 대해 기록할 권리를 가진다.

시간지연요구

앞에서 취급되였지만 선수는 도핑검사장소에 늦게 도착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 경우 도핑검사원이 선수의 요구를 승인해야 하며 전기간 감시하에 있는 조건에서만 허락된다.

시료수집과정에 대한 제한조건요구

선수가 시각적, 육체적, 지적장애가 있거나 미성년인 경우 시료수집과정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미성년선수인 경우

- 검사통지를 대리인앞에서 해야 한다. 미성년선수가 대리인을 거절하면 도핑검사원은 또 다른 3자의 동행을 고려한다.
- 미성년선수의 대리인은 시료수집에도 참가해야 한다. 만일 대리인을 거절하면 도핑검사원은 이에 대해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것이 검사의 효과성을 잃게 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 시료를 채집하는 동안 대리인은 도핑검사원이나 감시원 그리고 진행과정을 감시할 책임이 있다. 대리인은 미성년선수가 요구하지 않는 한 오줌시료를 받는것을 보지 말아야 한다.
- 시료를 채집하는 동안 도핑검사원/감시원도 자기 대리인이 참가하게 한다. 그 대리인은 도핑검사원/감시원을 감시하며 시료채집은 감시하지 않는다.

선수의 책임

-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한다.
- 도핑검사장소에 즉시 도착해야 한다.(지연을 요구하지 않는한)
- 시료를 제공해야 한다.
- 시료를 감시해야 한다.
- 도핑검사과정이 끝날 때까지 도핑검사원이나 감시원의 감시하에 있어야 한다.

선수보장성원의 책임은 무엇인가? 도핑검사과정에 선수보장성원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선수보장성원은 도핑검사시 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선수를 방조할수 있다. 선수보장성원은 또한 선수가 도핑통제절차를 이해하고 선수가 자기 권리와 책임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도록 도울수 있다.

제 7 과

선수생물려권이란 무엇인가?

선수생물려권은 많은 시료수집을 통해 작성된 선수의 생물학적 모형이다. 반도핑 조직은 한 선수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작성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면 비정상적인 결과가 어떤 원인으로 생겼는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해도 어떤것이 비정상인가를 결정할수 있다.

그러므로 려권모형에서의 작은 변화는 그 선수의 시료에서 약물의 비정상적인 비율이나 화학적 증거물을 검출하는 전통적인 검사방법과 차이가 있다.

전통적인 검사에서 반도핑 조직은 실지의 금지물질을 검출한다. 선수생물려권검사를 진행하면 정확한 물질을 검출할수는 없지만 그 물질이 신체에서 일으키는 효과를 찾을수 있다.

왜 생물려권이 이용되는가?

선수생물려권을 이용하는 반도핑 조직들은 선수들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에 기초한 목표검사를 할수 있다. 또한 반도핑 조직의 검사원천을 적게 이용하여 도핑 행위를 하는 선수를 적발할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선수생물려권시료는 어떤 시료이며 언제 수집되는가?

ABP 시료는 정상적인 검사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의 시간에 임의의 장소에서 수집된 오줌 및 혈액시료여야 한다. 하지만 선수의 혈액시료를 수집하려고 하는데 도핑검사원이 도착한 시점이 훈련이 끝난지 2 시간이 채 안되는 시점이라면 도핑검사원들은 2 시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혈액시료를 수집해야 한다.

선수에게 있어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ABP 시료를 수집할 때 검사와 도핑통제에 대한 모든것이 같은 조건으로 되여야 한다.(우에서 말한 2시간동안 휴식하는것을 제외하고)
- 선수의 ABP 시료는 WADA 인증실험실이나 ABP 를 위한 WADA 승인실험실에 보내여 분석하기때문이다.
- 일단 시료분석결과가 ADAMS 를 통해 실험실에서 보고되면 결과는 선수의 려권에 첨부된다.
- 선수의 려권은 WADA 인증실험실에 정한 선수려권관리단위에서 접수하고 관리하게 된다. 선수생물려권관리단위는 반도핑조직들과는 관계가 없으며 WADA 승인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 실험실과 선수생물려권관리단위는 려권번호만 볼수 있으며 선수의 이름은 보지 못한다.
- 선수생물려권관리단위는 추가검사, 목표검사, 시료보관 혹은 추가시료분석을 포함하여 려권평가에 따른 권고를 반도핑조직에 통지한다.
- 선수생물려권이 비정상적이면 선수생물려권관리단위는 ABP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구하며 선수가 도핑행위를 했는가를 결정한다.
- 도핑행위를 했는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려권은 3 명의 ABP 전문가심의에서 검토한다. 선수생물려권관리단위와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은 려권번호로 된 표식된 려권만 볼수 있으며 선수이름을 보지 못한다.
- 만일 3 명의 전문가심의에서 도핑행위를 한것같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선수는 통지를 받으며 선수에게 그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할 기회를 준다.

- 만일 전문가들이 선수의 설명서를 받은 후에도 이러한 결정을 주장한다면 금지 물질이나 방법의 사용에 대한 반도핑 규정 위반 행위로 된다.

제 8 과

맺 는 말

- 검사는 선수의 건강을 보호하고 체육정신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한다. 검사에는 오줌 및 혈액시료수집이 포함된다.
- 검사는 목표검사 혹은 우연선택검사로 진행한다. 민족반도핑조직, 국제련맹, 주요경기조직위원회와 같은 반도핑조직들에서 검사를 진행한다.
- 선수는 임의의 시간에 임의의 장소에서 사전통지없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 항상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선수가 시료제공을 거절하면 선수는 반도핑규정위반행위를 한것으로 되며 제재를 받게 된다.
- 선수는 도핑통제과정에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선수는 권리와 책임에 대해 알아야 하며 임의의 질문이 있는 경우 도핑검사원에게 물어보아야 한다.